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제정	2009.10.19.	2009.10.19.	리스크관리위원회
개정	2022.10.24.	2022.10.24.	리스크관리위원회

#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#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 58 조 제 1 항에 의거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 법규 (이하 “관련 법규” 라 한다)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 등” 이라 함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#### 1. 보수

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 다만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.
- 다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보관,관리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#### 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

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**제4조(수수료 등의 부과기준)**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비용과 수익,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③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
  - 나. 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
  - 다.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 : 제 1 호 및 제 2 호의 한도

**제5조(수수료 등의 부과절차)**

-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새로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경우 관련 법규, 운용자산의 특성과 규모, 총비용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기존 집합투자기구와 운용상의 중요 변경사항이 없는 등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합의와 품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**제6조(수수료 등의 인상)**

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을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

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설명 의무)**

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투자광고)**

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공시 등)**

- ① 회사는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제 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침의 제정 및 개정)**

이 지침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규정)** 이 지침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, 투자자문, 투자일임계약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